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3707-8235~6 / 전송 3707-8249
 처리부서 : 주택재개발과(서소문별관 2층) 과장 배경동 담당사무관 정병일 담당 김종애

문서번호 주재58531-2091
 시행일자 1999. 11. 12. (3년)

(경유)
 수신 내부결재
 참조



보존기간	3년	서울특별시	
공개여부	공개	1999. 11. 12 김무담담당관 재개발2담당사무관 김민준	
부시장			
국장			
과장	전결		
기안자	정병일		협조
심사자	김민준	심사일	1999. 11. 12

제 목 전농제5주택재개발구역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1. 동대문구 주택 58531-554(99. 11. 3)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부고시 제1993-376(93.9.25)호로 재개발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70(94.5.27)호로 지적승인, 같은고시 제1995-102(95.4.18)호로 사업계획결정, 같은고시 제1996-188(96.7.4)호로 사업계획변경결정 및 같은고시 제1999-258(99. 8 19)호로 구역변경 결정된 전농제5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구역변경 요청이 있어 내용 검토한바, 구역지정 당시 누락된 필지에 대한 선형변경(계획) 및 추가 편입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서,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구역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 따로붙임 : 1. 고시안(안) 1부.
 2. 구역변경 요청서 1부.
 3. 관계 서류 및 도면 1부. 끝.

서울특별시

(제2안)

수신 : 행정자치부장관

제목 : 관보게재 의뢰

아래와 같이 관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건명 : 전농제5주택재개발구역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의뢰인: [인명]

다. 관련법규 : 도시재개발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따로붙임 : 고시문 사본 2부. 끝.

서울특별시

전철주택재개발과장배경등

(제3안)

수신 : 건설교통부장관

참조 : 주거환경과장

제목 : 전농제5주택재개발구역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보고

1. 동대문구 주택 58531-554('99. 11. 3)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부고시 제1993-376('93.9.25)호로 재개발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70('94.5.27)호로 지적승인, 같은고시 제1995-102('95.4.18)호로 사업계획결정, 같은고시 제1996-188('96.7.4)호로 사업계획변경결정 및 같은고시 제1999-258('99. 8. 19)호로 구역변경 결정된 전농제5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구역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따로붙임 : 1. 고시문 사본 1부.

2. 관계 서류 및 도면 1부. 끝.

서울특별시

전철주택재개발과장배경등

(제4안)

수신 동대문구청장

참조 주택과장

제목 전농제5주택재개발구역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통보

1. 동대문구 주택 58531-554('99. 11. 3)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 전농제5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주택재개발구역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음을 통보하니 관련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이고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 도시계획 등의 업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고시문 사본 1부.

2. 관계 서류 및 도면 1부. 끝.

서울특별시

전철주택개발과장배경등

(제5안)

수신 : 수신처참조

제목 : 전농제5주택개발구역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통보

우리시 동대문구 전농제5주택개발구역에 대하여 구역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음을 통보오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고시문 사본 1부.

2. 관계 서류 및 도면 1부. 끝.

주택개발과장

수신처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원본대조필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59호

의결일자	1999.11.19	제359호
담당자	신석기	부담담당
동원	안민	주도

건설부고시 제1993-376('93.9.25)호로 재개발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70('94.5.27)호로 지적승인, 같은고시 제1995-102('95.4.18)호로 사업계획결정, 같은고시 제1996-188('96.7.4)호로 사업계획변경결정 및 같은고시 제1999-258('99. 8 19)호로 구역변경 결정된 전농제5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구역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999년 11월 일

서울특별시장

전농제5주택재개발구역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안)

-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전농제5주택재개발사업
- 나. 위치 : 동대문구 전농동 141번지 일대
- 다. 면적 : 21,725㎡
- 라.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계		21,724	21,725	증 1	
택지	소계	21,039	21,040	증 1	
	택지 1	18,578	18,579	증 1	조합 및 분양아파트
	택지 2	2,461	2,461	변경없음	임대아파트
공공시설	도로	685	685	변경없음	

- 마. 공공시설 결정조서
 - 도로결정조서 : 변경없음

원본대조필

바.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사. 변경사유 : 구역지정 당시 누락된 필지에 대한 선형변경(제척) 및
추가 편입

아. 관계서류 및 도면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재
개발과(전화: 3707-8235)와 등대문구 주택과(전화: 920-4672)에 관련
서류 및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